

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

의안 번호	3-1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5. 10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등 파주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(추가) 되었으므로 도시
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(추가) 고시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1. 파주시도시계획구역 변경(추가)에 따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
가. 가정 : 53.674km²
나. 변경 : 61.689km²
다. 증가내역 : 교하읍 도시계획 추가 결정(8.015km²)
2. 읍·면·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현황(별도붙임)
3. 도시계획세 과세현황

(단위:건, 백만원, %)

구 분	2002 부과현황		2003년 부과예상		2003년 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	
	과 세 물건수	세액(A)	과 세 물건수	세액(B)	증감세액	증감율 (B/A)
계	81,783	1,769	102,869	2,477	708	140.0
재산세분	42,426	916	52,467	1,276	360	139.3
도시계획세						
종합토지세분	39,357	853	50,402	1,201	348	140.7
도시계획세						

4. 과세물건 범위

가. 과세대상 : 도시계획구역내 토지·건축물

나. 과세제외 토지

-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
-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

□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235조(과세대상) 및 제238조(부과징수)
-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(토지·건축물의 범위)
-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(과세대상토지의 범위)
- 파주시시세조례 제84조(납세의무자) 및 제85조(부과지역의 고시)

□ 고시안

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(안) - (별도붙임)

□ 예산수만사항 : 없음

□ 첨부(참고서류)

1.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(안) 1부.
2. 도시계획구역변경(고시문) 사본 1부.
3. 읍·면·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 1부.
4. 관계법령 발췌 1부.

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(안)

파주시 고시 제2003 - 호

지방세법 제238조 및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(추가) 고시합니다.

2003년 월 일

파 주 시 장

- 다 음 -

1. 부과지역 : 파주시도시계획구역 전지역(행정구역별 부과지역현황 별첨)

구 분	기 정	변 경	증 감	비 고
면 적	53.674km ²	61.689km ²	8.015km ²	

2.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파주시 시세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파주시 시세과(031-940-4251)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우) 480-848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	전화 (031)850-2942	팩스 (031)850-2969
도시주택과	과장 김창규	담당 이광복 담당자 안재명

문서번호 행정(2)도시58412-27222

시행일자 2002.06.26 (1년)

공개여부 공개

수신 파주시장

참조

선 람	과장	우 광 복	지 시		
접 수	일자 시간	2002.06.26 10:02	결 재 공 람	담당	장 원 모
	번호	2545			
	처리과	도시과			
	담당자	신 창 규			
	심사자		심사일		

제목 파주 교하 도시계획구역 결정 통보

1.관련문서 : 건설교통부 58400- 590(2002.6.17)호

파주 도시 58400-2448 (2001.9. 4)호와 관련임

2.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파주 교하도시계획 결정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결정도서를 귀시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같은법 2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0 행하는등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3.도시계획관련 중앙부처 협의의견에 대한 귀시의 조치계획을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도시계획구역 결정도서 1부(별도송부)

2.고시문 사본 1부(별도송부)

3.도시계획관련 부처 협의의견 1부(별도송부) 끝

경 기 도

진길 도시주택과



고 시 문
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-125호

파주 교하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시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
2002. 6. 17.

건설교통부장관

다 음

1. 파주 교하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 분	도시계획 구역명	행정구역명	면적(km ²)	비 고
신 설	교하	파주시 교하면 야당리, 다율리, 동패리, 목동리, 당하리, 와동리	8.015	최초결정

2. 파주 교하도시계획구역 결정도면 : 생략. 끝.

읍·면·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

(단위 : km²)

도시계획구역		기정	변경	비 고
구역명	읍면동별	면적	면적	
파주시 도시계획구역	계	53.674	61.689	
	문 산 읍	12.652	12.652	47.366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파 주 읍	8.022	8.022	32.218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법 원 읍	6.515	6.515	71.095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교 하 읍	-	8.015	57.860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번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월 룡 면	-	-	-
	탄 현 면	4.262	4.262	60.172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광 탄 면	5.707	5.707	65.443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파 평 면	-	-	-
	적 성 면	4.570	4.570	88.969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	군내, 장단, 진동, 진서면	-	-	-
	금촌1,2동 (조리읍 포함)	11.946	11.946	51.321km ² 중 (구)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

※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(추가) 지역

○ 교하읍 야당리 일원 8.015km²

(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-125호, 2002. 6. 17)